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제9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3제5항”을 “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91조의3제4항”을 “제91조의3제7항”으로 한다.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종료 동의 신청) ① 교육감은 영 제91조의3제9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(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)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영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

2. 지정·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

제60조의 제목 “(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)”를 “(지정,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동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”을 “제56조제1항, 제5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3항 중 “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”을 “지정, 지정 취소 또는 지정 종료 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정 또는”을 “지정, 지정 취소 또는”으로, “취소”를 “종료”로 한다.

제62조제1호 전단 중 “제91조의3제4항”을 “제91조의3제7항”으로 한다.

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종료 동의 의견의 유형 등) 교육부장관은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.

1. 동의: 교육감이 영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2. 부동의: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62조의3(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연장 등) ① 교육감은 영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연장하거나 제62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연장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제6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종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7조(지정 취소 동의 신청)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, 제9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,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	제57조(지정 취소 동의 신청) ① -----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(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)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76조제5항,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	2. ----- 제91조의3제7항----- -----
3. 영 제76조제5항제5호 또는 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	3. (현행과 같음)

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

4. (생략)

<신설>

제60조(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

4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2(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종료 동의 신청) ① 교육감은 영 제91조의3제9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(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)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영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

2. 지정·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

제60조(지정, 지정 취소 등에 대한

동의) ① 교육부장관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동의와 관련한 서식,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 동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62조(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)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

동의) ① ----- 제56조제1항, 제5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 제1항-----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지정, 지정 취소 또는 지정 종료 -----

-----.

④ 지정, 지정 취소 또는 -----
----- 종료 -----

-----.

제62조(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) -----

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.

1. 동의: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,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-----
----- 제91조의3제7
항-----
-----.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제62조의2(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종료 동의 의견의 유형 등)
교육부장관은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.

1. 동의: 교육감이 영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2. 부동의: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62조의3(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

지정 연장 등) ① 교육감은 영 제9
1조의3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
고등학교의 지정을 연장하거나 제
62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부장관
의 부동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
학교의 장에게 지정 연장을 즉시
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62조의2제1호에 따
른 교육부장관의 동의 결정이 있
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
종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